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45
----------	-------

발의연월일 : 2024. 2. 23.

발 의 자 : 김승수 · 이주환 · 임이자
한무경 · 김상훈 · 권명호
박대수 · 임병헌 · 김석기
조명희 · 지성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며,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공간 활용 등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고, 그 안에서 공원, 산책로 등 다양한 친수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치수(治水), 이수(利水) 기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한 친수 기능까지 모두 국가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친수기능을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국가하천 내의 친수지구에 대하여 국가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중 “미리”를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하천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친수지구에 관한 특례) ①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친화적 활용을 위하여 해당 지구에 대한 하천공사시행 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 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하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변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수립
2.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3. 공청회의 개최
4.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시기·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 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 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u>미리</u>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미리</u> 해 <u>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u> <u>(국가하천에 한정한다)</u> ----- ----- ----- ----- ----- -----.
⑥ ~ ⑧ (생 략) <u><신 설></u>	⑥ ~ ⑧ (현행과 같음) <u>제45조의2(친수지구에 관한 특례)</u> ① <u>국가하천 친수지구의 효율</u> <u>적인 관리 및 주민친화적 활용</u> <u>을 위하여 해당 지구에 대한</u> <u>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변</u> <u>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2</u> <u>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u> <u>의 권한으로 한다.</u> ② <u>시·도지사가 제27조에도</u>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 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하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변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수립

2.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3. 공청회의 개최

4.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시기·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